

민원 인쇄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8-0790217
신청일	2026-08-20 08:27:52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은평경찰서 수사 6팀 김순옥 경감에게
내용	고소장 고소인: 김명호, 서울 은평구 진관 3로 15-45 피의자: 김영석, 박광식, 전보영, 한명희,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 서울시 위촉 위원들 제목: [형법] 제355조(배임), 제32조(중범) 위 피의자 4명을 배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은평뉴타운 10단지-1 아파트 관리소장 임상현외 6인의 공범으로 추가 고소한다(서부지검 2026형제4934호, 은평경찰서 2026-001051).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피의 사실

1. 서울시 소속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아님에도 특정 직무 수행 시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책임과 청렴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감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 위반 사항을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5항 제 8호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 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지난 2월말 경,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 관리비 비리 신고 후,
6개월 가까이 질질 끌어진 은평구청이 4일간의(8.18-21일) 감사한다하여
18일 오후 3-4시, 감사현장에(입주자 대표회의실) 가보니,

김영석, 박광식, 전보영, 한명희 피의자 4명이
임상현이 제공한 자료들을 토대로 각자 노트북을 들여다 보고 있길래,

아파트 비리는 관리비 도둑질이고 그 도둑질의 핵심수단은 정부와 국토부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 법규를 제정”하며 총력을 기울여 지양하는 “수의 계약”인데,

(1) 관리소장 임상현은 2023년 9월 부터 2026년 2월까지 단 한번도 수의 계약서
사본을 공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위반), 2023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 한번도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위반)

(2) 고소인이 2023년 9월 개설하여 임상현이 동게시판에 올려놓은 게시물을 스캔해서
올려놓은 카페가(<https://cafe.naver.com/eunpyeong10>) 그 입증 증거이니
확인하라며 주소 기재한 종이를 건네 주었고

(3) 동게시판에 공개하지도 않은 수의 계약서 사본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서대로 거래가
집행되었는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에 규정된, 거래대금 입증 자료,
3가지(세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카드 거래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4) 회계담당 한명희(?)는 나가고, 다른 3명의 위원들은 수의 계약서 사본에 대한 아파트
동별 게시판 공개 여부 판단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범죄자 임상현이 제공한
자료들만으로 판단하겠다고 고집하며 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2+3×5를 계산함에 있어 곱셈의 우선 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오답을 얻듯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의 최우선 순위는 관리비 도둑질 조사임은 명백하고 그 핵심 수단
수의 계약 위법성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3. 이러한 피의자들의 감사 작태는

“도둑놈이 훔친 물건 뒤로 숨기고 빈손을 내보이며 훔친 거 없다”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하나마나한 개판 위법 감사”에 의한 국민세금
도둑질일 뿐만 아니라 임상현 범죄 은폐하는 중범 행위인 것이다

이런 돌대가리/사기꾼이나 다름 없는 위촉 위원들 척결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라

	2026.8.19 김명호
첨부 파일	
피민원인명	김영석, 박광식, 전보영, 한명희
피민원인 근무처명	은평구주택비리 서울시 감사 위촉위원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은평경찰서)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8-0779024
접수일	2026-08-20 08:27:52
담당자(연락처)	()
처리에정일	2026-08-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